

# 투자권유준칙

제정 2009.02.04.  
개정 2009.03.16.  
개정 2011.01.10.  
개정 2013.11.25.  
개정 2014.03.26.  
개정 2014.06.02.  
개정 2015.01.02.  
개정 2015.02.02.  
개정 2015.09.01.  
개정 2015.10.30.  
개정 2016.04.01.  
개정 2016.07.04.  
개정 2016.08.08.  
개정 2016.12.16.  
개정 2019.10.01.  
개정 2020.04.29.  
개정 2021.09.01.  
개정 2023.06.23.  
개정 2024.03.01.  
개정 2024.08.12.  
개정 2024.10.28.  
개정 2025.03.24.  
개정 2025.10.27.  
개정 2026.01.01.  
개정 2026.02.02.

## 제1편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②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③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④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1.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가.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나.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 다.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
- 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 마.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다만,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 바.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사. 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 2.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나. 증권(증권시장에서 매도계약이 체결된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 다. 그 밖에 제5항 제1조 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 (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2. 유의사항: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 **제7조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 경험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적정성 판단보고서)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1장 투자자정보**

#### **제8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금융투자상품 적합성(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가 평가 결과를 안 후에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면거래: 투자자 정보 중 금융투자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적으로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 불허. 다만,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투자자 요청 시 변경 허용
  2. 비대면거래: 회사가 투자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횟수를 사전 제한하고,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예: 고령자, 장애인), 정보유형(예: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3. 재평가 시 기록 및 유지: 회사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투자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④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 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재산정 혹은 재검증 결과 추가적립 가능 펀드의 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된 경우 추가적립 시점(자동적립은 자동적립 서비스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성향 분류 결과 등을 기초로 투자자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추가적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른다.
- ⑦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제9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

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펀드 거래)** 온라인 거래시에도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온라인 투자자들 중 투자성향이 확인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투자자가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걱정하지 않은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별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추천펀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펀드의 선정주기·선정절차·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펀드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 ⑤ 회사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서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장 투자권유

### 제11조 (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적합성(적정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전에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 중 적합성(적정성) 판단 기준의 혼합 방식을 참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⑤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는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

(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2.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일반 금융소비자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⑦ 임직원등은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ELS, ELF, ELT, DLS, DLF, DLT를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⑨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과정의 녹취범위는 최소한 '투자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로 정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녹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결과를 안내하는 단계부터 녹취할 수 있다.

⑩ 유효한 투자자성향 정보가 있는 투자자인 경우, '투자자성향 변경여부를 확인 및 안내하는 시점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로 정한다. 이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는 판매시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금 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매우낮은위험(6등급) 상품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적합성(적정성) 판단 기준과 [별표 제2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13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1)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2)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3. 금소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4. 일반금융소비자와 대면하여 투자성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요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

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3항 제2호 따른 목표시장의 설정기준에 부합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가 스스로 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를 징구하는 경우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3조의 2 (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센터장을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거래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 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다.
-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설명의무

### 제14조 (설명 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담당직원 확인서에 서명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특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⑧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⑩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⑪ 임직원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2.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

### 제15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 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15조의 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사전 기준」을 고려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별표 제1호]와 같이 정한다.

1. 기초자산의 변동성
2. 신용등급
3. 상품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5. 환매·매매의 용이성
6. 환율의 변동성
7. 그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7조 (계약서류의 교부)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 제18조 (투자성 상품의 청약 철회)

①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제19조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①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신용정보원 등에 연락하여 해당 투자자에 대한 대출기록 삭제 요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20조 (위법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제21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2조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제23조 (자기매매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부당한 권유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 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 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

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⑥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⑧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⑨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안된다.

#### **제25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제26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 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7-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7조 (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및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의 금융투자상품 적합성(적정성) 판단 기준 및 투자일임 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 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 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성향의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8조 (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채권의 장외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채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명일 전영업일 기준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2. 채권의 매매수익률, 매매단가

3.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의 차이 및 비율
  4. 채권 투자 특징으로서 채권 수익률과 투자 위험의 관계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 ② 임직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
  2.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3. 고객이 매도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증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4. 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간과 채권만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③ 임직원 등은 과거에 투자권유하였으나 현재는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투자자 보호 사유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상세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30조 (기타)

- ①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 ② 이 준칙에서 언급되는 <투자권유준칙 별지서식>은 투자권유준칙에서 분리하여 영업추진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투자성향별, 투자위험도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 금융투자상품 등 위험등급 분류기준

구 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채 권	(B+ 이하) PF사모사채, 무등급사모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BB- ~ BB+	BBB- ~ BBB+	A- ~ A+	AA- ~ AAA	국공채등 <sup>1)</sup>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등)
R P						원화 RP
단기사채 / C P / C D	단기사채, CP (B+ 이하)		단기사채, CP (A3- ~ A3+)	단기사채, CP (A2- ~ A2+)	단기사채, CP (A1)	CD
파생 결합 상품	ELS, DLS, ELB, DLB	원금비보장형		원금 80%이상 보장형(BBB- 이상)	원금 90%이상 보장형(A- 이상)	ELB/DLB 원금지급형(발행사 AA- 이상)
ETF/ETN/ELW	파생형 ETF, 파생형 ETN, ELW	상장형 수익증권 ETF, ETN	-	-	-	-
지분증권	투자경고/ 위험종목 관리종목, 신용거래, 비상장주식,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출자지분	주 식,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	-	-	-
선물옵션	선물옵션	-	-	-	-	-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영역	▶ 공격투자형 : 모든 상품 투자권유 가능 ▶ 적극투자형 : 높은위험 이하 <span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투자 가능영역</span> ▶ 위험중립형 : 다소높은위험 이하 ▶ 안정추구형 : 보통위험 이하 ▶ 안정형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height: 15px; margin-top: 5px;">투자 불가능영역</span>					

◎ 집합투자증권

구 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영역	▶ 공격투자형 : 모든 상품 투자권유 가능 ▶ 적극투자형 : 다소높은위험 이하 <span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투자 가능영역</span> ▶ 위험중립형 : 보통위험 이하 ▶ 안정추구형 : 낮은위험 이하 ▶ 안정형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height: 15px; margin-top: 5px;">투자 불가능영역</span>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분류

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제1조(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①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②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③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 제2조(고령투자자의 정의)

- ①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②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 및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한다.

## 제3조(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부, 점, 센터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②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해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해당 창구는 고령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도 이용 가능하며, 전담창구 배치직원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 근무연한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전담창구에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지점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팀장은 배제하여야 한다.
- ⑤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
  - 1.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2.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3.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4.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5.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6.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7.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8.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9.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10.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제4조(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전담부서: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
- 2. 전담인력: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직원

### 제5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제6조(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부, 점, 센터장(이하 관리직 직원)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관리직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들은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2.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3.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4.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5.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④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이 추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 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 가능하다.
- ⑤ 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 제7조(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①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녹취제도 및 숙려제도)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체결에 대한 지정인 확인(지정인확인서비스))

회사는 고령투자자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령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중에 고령투자자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고객의 계약체결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고령투자자와 함께 숙고하여 줄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11조(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담당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와 같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한 경우
2. 과도한 신용거래가 발생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3. 최근 주문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 (예: 투자자성향 상향 등)이 있는 계좌
4.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계좌

#### **제12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실무적으로는 창구에서 고객이 녹취전화로 조력자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하여 동의내용을 녹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13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 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14조(초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 ①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

#### **제15조(조력자와의 상담)**

- ①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고객은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 고객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16조(사후모니터링 강화)**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거나 관리직 직원이 판매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피콜 생략이 가능하다.

#### **제17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